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5098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우기석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0.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은 12,141,28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2018. 4. 23. C이 D은행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D은행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0. 9. 24.부터 D은행에 이자 등을 연체하여 D은행은 2020. 12. 30.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21. 2. 9. 보험금 11,992,450원을 지급하였다. 2021. 4. 15.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12,141,280원이다.

다. C은 그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2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1/2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20. 8. 31. 접수 제98555호로 마쳐주었다.

라. C과 피고는 2006. 2. 3.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20. 10. 22.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C과 피고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으로 148,372,504원 상당의 사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한 반면, C은 적극재산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소극재산만 11,992,450원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기여도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직후 C이 무자력에 빠진 점, 그리고 이에 더해 피고와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 비교 형량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가 2020. 10. 22.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 이전인 2020. 8. 31. 이루어졌기는 하나 협의이혼 신고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③ C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여 왔고, 피고가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8. 31. 당시 14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②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추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받을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앞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건물

[도로명주소] 안산시 상록구 G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안산시 상록구 E 대 30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8.58㎡

(대지권의 표시)

303.7분의 39.52. 끝.

